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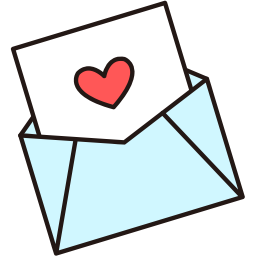
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



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?

A 예, 있습니다.

특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

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A 아니요, 안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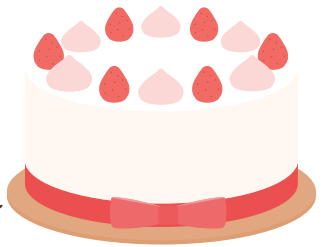


다만,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·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Q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이 돈을 모아 교수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할 수 있나요?

A 아니요, 안됩니다.

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

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?

A 예, 가능합니다.

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교수와 학생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,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[출처 :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]

